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FOCUS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극… 어떻게 대비할까?

SPECIAL REPORT

생보기반 GA들 ‘위기 직면’… 체질개선 불가피 “손보로 재편”
방문진단·서류심사 ‘아듀’… ‘유병자 가입문턱’ 줄파괴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 영업현장 ‘설왕설래’
‘여름시즌’ 마케팅戰 돌입… 운전자·상해보험 “일제정비”
80세 이후 ‘실손 보장 절벽’해결… “100세만기 실손 예약제” 눈길”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전격 등장… “언터라이팅” 성패 관건
“사고당 10억 보장”… 자자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총력전”
하반기 상품개정 ‘속도’… 癌·유병자·무해지보험 “경쟁력”

SPECIAL INTERVIEW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장동한 회장
수원우체국 오영실 FC



‘격락손해’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통상손해일까 특별손해일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때,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대형 전세버스)이 신차등록 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 발생했다.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세는 약 1억 4500만원 정도였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좌우 프론트 헤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재수리 했고 그 수리비로 2200만원이 지급되었다.
- 이 사고로 인한 사고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한다.

[원심판결]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척

이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고 할 수 없다. 또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됐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 등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특히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판례평석]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 이를 '격락손해' 또는 '교환가치의 감소' 내지 '시가하락 손해'라 한다.

시가하락 손해(격락손해)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와 특별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 통상손해로 보는 경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 특별손해로 보는 입장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 즉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63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시가하락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 달리 취급하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다만 종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손해(시가하락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던 것을 '통상손해'로 봤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능상 사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의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사고 차량의 시가하락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일괄적으로 통상의 손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통상손해로 본 것.

시가하락 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리상 수리 이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과거 대부분의 판례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시가하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원심판결도 같은 입장에서 시가하락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중고차 시장에선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 없는 동종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과연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현실성을 반영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다.

실제 자동차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된다. 또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진다.

[별지 제 82호 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증시 번호:																				
1. 차명	투싼 (TUCSON)		2. 자동차 등록번호	3. 주행거리 및 개기상태		16,659 Km <input type="checkbox"/> 작동불량																				
4. 연식	2016		5. 검사유예기간	2015-07-13 부터 2019-07-12 까지																						
6. 최초등록일	2015-07-13		8. 변속기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동 <input type="checkbox"/> 수동 <input type="checkbox"/> 세미오토 <input type="checkbox"/> 무단변속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7. 운동기형식	D4FD		10. 보증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기보증 <input type="checkbox"/> 보험사보증																						
9. 차대번호			11. 등록증 확인 (차대번호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상이 <input type="checkbox"/> 부식 <input type="checkbox"/> 웨스(온온) <input type="checkbox"/> 변조(변색) <input type="checkbox"/> 도말																						
12. 물별구조변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13. 사고/유우 (단순수선인 제외)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		14. 응수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15. 차기진단시험	항목	양호	정비요	16. 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																					
	엔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탄화수소(HC) PPM																						
	변속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연	5.5 %																					
17. 주요장치	필름	해당부품		상태																						
	작동상태(공회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소음 <input type="checkbox"/> 정비요																							
18. 자동차의 상태표시																										
<p>19.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p> <table border="0"> <tr> <td><input type="checkbox"/> 1. 후드</td> <td><input type="checkbox"/> 2. 프론트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3. 도어</td> <td><input type="checkbox"/> 4. 트렁크리드</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5. 라디에이터 서포트 (콘트체결무垢)</td> <td><input type="checkbox"/> 6. 퀘터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7. 루프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8. 사이드실휀더</td> </tr> </table> <p>20. 주요금屬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p> <table border="0"> <tr> <td><input type="checkbox"/> 9. 프론트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10. 크로스멤버</td> <td><input type="checkbox"/> 11. 인사이드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12. 사이드멤버</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13. 월하우스</td> <td><input type="checkbox"/> 14. 필러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15. 대쉬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16. 플로워휀더</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17. 트렁크룸로워</td> <td><input type="checkbox"/> 18. 리어휀더</td> <td><input type="checkbox"/> 19. 패키지트레이</td> <td></td> </tr> </table> <p>*비금속 또는 탄부적 가능 부품은 경경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 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p> <p>21. 드라이시월 및 점검자 의견 내관보증제외</p>							<input type="checkbox"/> 1. 후드	<input type="checkbox"/> 2. 프론트휀더	<input type="checkbox"/> 3. 도어	<input type="checkbox"/> 4. 트렁크리드	<input type="checkbox"/> 5. 라디에이터 서포트 (콘트체결무垢)	<input type="checkbox"/> 6. 퀘터휀더	<input type="checkbox"/> 7. 루프휀더	<input type="checkbox"/> 8. 사이드실휀더	<input type="checkbox"/> 9. 프론트휀더	<input type="checkbox"/> 10. 크로스멤버	<input type="checkbox"/> 11. 인사이드휀더	<input type="checkbox"/> 12. 사이드멤버	<input type="checkbox"/> 13. 월하우스	<input type="checkbox"/> 14. 필러휀더	<input type="checkbox"/> 15. 대쉬휀더	<input type="checkbox"/> 16. 플로워휀더	<input type="checkbox"/> 17. 트렁크룸로워	<input type="checkbox"/> 18. 리어휀더	<input type="checkbox"/> 19. 패키지트레이	
<input type="checkbox"/> 1. 후드	<input type="checkbox"/> 2. 프론트휀더	<input type="checkbox"/> 3. 도어	<input type="checkbox"/> 4. 트렁크리드																							
<input type="checkbox"/> 5. 라디에이터 서포트 (콘트체결무垢)	<input type="checkbox"/> 6. 퀘터휀더	<input type="checkbox"/> 7. 루프휀더	<input type="checkbox"/> 8. 사이드실휀더																							
<input type="checkbox"/> 9. 프론트휀더	<input type="checkbox"/> 10. 크로스멤버	<input type="checkbox"/> 11. 인사이드휀더	<input type="checkbox"/> 12. 사이드멤버																							
<input type="checkbox"/> 13. 월하우스	<input type="checkbox"/> 14. 필러휀더	<input type="checkbox"/> 15. 대쉬휀더	<input type="checkbox"/> 16. 플로워휀더																							
<input type="checkbox"/> 17. 트렁크룸로워	<input type="checkbox"/> 18. 리어휀더	<input type="checkbox"/> 19. 패키지트레이																								

▲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결국 사고경험이 있는 차는 수리 이후에도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상판결은 설령 차량을 수리해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본 판결이다.

특히 대상판결이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참작하도록 한 것은 중고차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인 ▲프론트휀더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휀더 ▲사이드멤버 ▲월하우스 ▲필러휀더 ▲대

쉬페널 ▲플로어페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페널 ▲패키지트레이 등에 수리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가하락 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받기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차의 주요골격이 아닌 부위에 손상을 입은 경우, 시가하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볼 여지를 남겨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그 손상이 극히 경미하지 않는 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능상 사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의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시가하락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다고 보기 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맞게 교통사고로 자동차 파손 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

해로 보아야 마땅하다[지창구,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법률신문 (2016. 8. 22.)].

결국 사고 차량의 시가하락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일괄적으로 통상의 손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동지; 이동기, 사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실무연구 (2014. 1.), 광주지방법원, 183]. [InS](#)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무사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침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